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2540호

2026년 8월 13일 (목)

차 례

조례 · 규칙

- 파주시 조례 제2416호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1
- 파주시 조례 제2417호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파주시 조례 제2418호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파주시 조례 제2419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파주시 조례 제2420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파주시 조례 제2421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파주시 조례 제2422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파주시 규칙 제830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고시 · 공고

- 파주시 공고 제2026-2263호 부의안전공고 52
- 파주시 공고 제2026-2268호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53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16호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재도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재도약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생애설계 및 경력설계 교육·상담 지원
2.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지원
3. 중장년 취업·재취업·창업 지원 및 정보 제공
4. 중장년 심리상담, 관계회복 등 정서·사회적 지원
5.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6. 중장년 건강증진, 문화·여가 활동 지원
7. 중장년 학습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8.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

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과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 940-5923
입안자	김선미 의원

□ 제정이유

- 파주시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설계, 취업·재취업,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장년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5조 ~ 제6조)
- 경비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7조 ~ 제8조)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제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17호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
당 실·국장 3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을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AI정책관 ☎ 940-4141
입 안 자	AI정책관	장 호 성
	AI정보기획팀장	신 수 경
	담 당 자	임 소 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 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사람으로 한다.</u>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 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 련 업무 담당 실·국장 3명 이 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생 략) 2. <u>시의 실·국·소·본부장 3 명</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생 략) ④ ~ ⑩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② <u>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현 행과 같음) ② ----- <u>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u>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의 변경 및 지능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시(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제8조)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18호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인공지능위원회)”를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을 “시장이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국장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한”을 “대한 소속 직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AI정책관 ☎ 940-4215
입 안 자	AI정책관	장 호 성
	AI기반팀장	남 효 정
	담 당 자	이 성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u>인공지능위원회</u>) ① · ② (생략)	제7조(<u>과주시 인공지능위원회</u>)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u> 으로 한다.	③ ----- <u>시장</u> <u>이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국장 3명</u> -----.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u>과장</u> 이 된다.	④ ----- ----- ----- ----- <u>부서장</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략)	제13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u>국장</u> 이 주재한다.	③ ----- <u>부서장</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u>대한</u>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	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 ① --- ----- <u>대한 소속 직원 및</u> ----- -----

진대회, 공모전, 프로그래밍 대회(해커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	---

□ 개정이유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공지능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공지능 위원회의 조 제목 변경(제7조)
- 인공지능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제8조)
- 실무협의회 위원장 직위 변경(제13조)
- 경진대회 및 포상 대상에 “소속 직원” 명시(제17조)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19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매목표비율”을 “구매목표 비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우선구매촉진”을 각각 “우선구매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구매촉진”을 각각 “구매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우선구매 촉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8420
입 안 자	노인장애인과장	우 은 정
	장애인시설팀장	정 향 숙
	담 당 자	전 혜 립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 <u>우선구매촉진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 ----- ----- ----- ----- ---- “ <u>우선구매 촉진계획</u> ”---- ----- -----.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u>구매목표비율</u>	1. ----- ----- <u>구매목표 비율</u>
2. 중증장애인생산물 <u>우선구매</u> <u>촉진</u> 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 <u>우선구매</u> <u>촉진</u> ----- ----
3. 중증장애인생산물 <u>우선구매</u> <u>촉진</u> 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 <u>우선구매</u> <u>촉진</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중증장애인생산물 <u>구매촉진</u> 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 <u>구매 촉진</u> ----- ----- --
6. 중증장애인생산물 <u>구매촉진</u> 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	6. ----- <u>구매 촉진</u> ----- -----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7. -----
구매 촉진-----

③ ----- 우선구매 촉진계획-----

-----.

② ----- 법

제7조 제5항-----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u>우선구매촉진계획</u>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애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u>우선구매 촉진계획</u>----- -----.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변경(제6조제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조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7조제2항)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20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940-5222
입 안 자	청년청소년과장	유 연 욱
	청 소 년 팀 장	김 명 기
	담 당 자	유 지 영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	문산청소년센터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을 통일로 1680
		운정청소년센터		와석순환로 415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4호점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하우3길 77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5호점		금정로 45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6호점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청소년자유공간 쉽표 7호점		미래로 350
청소년 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문산을 통일로 16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청소년쉼터	파주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 지원	해울2길 7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문산청소년센터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어린이(1~8세)	2,000	2,500	30,000	
청소년(9~24세)	2,500	3,000	40,000	
성인	4,000	4,500	55,000	

※ 동일 소속팀(단체) 2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나. 단체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강당	사용료	2시간	22,500	75,000	1시간당 37,500원
	냉·난방	1시간	-	15,000	초과 시간당 15,000원
체육관	사용료	2시간	16,500	55,000	1시간당 27,500원
	냉·난방	1시간	-	18,000	초과 시간당 18,000원
중강의실, GX실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 개인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음 악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영 상 촬 영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플 레 이 존	1대 1회	무료	1,000	기준 초과시 1대 1회 1,000원

라. 프로그램 강습료

구 분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음악	40,000	70,000	80,000	100,000	110,000	130,000	
정보·과학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문예 및 창작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악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 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 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2. 운정청소년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2시간	9,000	30,000	1시간당 1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중강의실 (운정)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운정)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강당 (운정,교하)	사용료	2시간	15,000	50,000	1시간당 2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	사용료	2시간	10,0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밴 드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1,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커뮤니티공간 (운정)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기 타 시 설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다. 프로그램 강습료 : 문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강습료 준용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1.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2.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목적상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무료로 한다.

□ 개정이유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 (별표 1, 별표 2)
- 청소년시설(활동시설) 종류 및 기능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변경 (별표 1)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21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독서캠핑장, 독서열차”를 “독서캠핑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하여”로,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해야 하며,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소관 부서		중앙도서관 ☎ 940-5642
입안자	중앙도서관장	구 자 정
	도서관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송 영 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도서관, <u>독서캠핑장</u> , <u>독서열차</u> 등)을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u>독서캠핑장</u> ----- --.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u>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u> 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2. (생략) 3. <u>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u>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 ----- <u>위하여</u> ----- ----- ----- ----- <u>시행해야 하며,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u>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u>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u>

4. ~ 6. (생략)

③ (생략)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

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

<삭 제>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

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
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
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
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
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삭 제>

<삭 제>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개정이유

- 도서관 조직개편 후 분리되어 있던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일몰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몰사업 삭제(제2조제1호)
-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수정 및 삭제(제3조제1항, 제9조 ~ 제15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제3조제2항제3호)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7회·제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조례 제2422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며, “문화계·교육계”를 “문화계·교육계·출판계”로, “주민”을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자원봉사자에 대한”으로, “실비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를 “실비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26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소관 부서		중앙도서관 ☎ 940-5642
입안자	중앙도서관장	구 자 정
	도서관정책팀장	이 중 숙
	담 당 자	송 영 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u>	<u>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u>관리 운영</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관리·운영</u> ----- ----- --.
제4장 <u>도서관운영위원회</u>	제4장 <u>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u>
제1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 ----- <u>30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과 도서관 업무 관련 <u>부서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 파주시의회 의원, <u>문화계·교육계</u> 등 전문 인사 및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u>주민</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 <u>국장</u> ----- ----- ----- <u>문화계·교육계·출판계</u> ----- ----- <u>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	제20조(회의) ① -----

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확대를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과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연 2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자원봉사자) ① ----- 시
민참여 -----

-----.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
----- 실
비는 「과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
-----.

제26조(권한의 위임) -----
----- 관리·운영 -----

-----.

□ 개정이유

-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제명 및 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제18조제1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및 분야 추가(제18조제3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제20조제1항)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규정 정리(제25조제2항)

2026년 제9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

2026년 8월 13일

파주시 규칙 제830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중앙도서관 ☎ 940-5642
입 안 자	중앙도서관장	구 자 정
	도서관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송 영 규

시설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별	남 ☐ 여 ☐
	연락처		SMS 문자 수신 동의 여부 ☐	
시설명				
행사명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비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도서관장 귀하				
※ 담당자 기입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			
	☐ 취소	취소일시 : 취소사유 :		

(뒷면)

허 가 조 건

-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파주시 및 도서관 자체행사 및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승인자의 동의 없이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승인시간을 준수하며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 도서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물 내에는 음식 반입 및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 시설물 사용 전과 사용 후에는 반드시 승인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정리 정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공공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관리(개인 식별 및 부정이용 방지·민원 처리 경로 확보 등)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락처입니다.
3. 수집한 개인정보 및 본 신청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1년간** 보유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변경)에 관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탁신청서			
1. 위탁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		
	연락처		
	주 소		
2. 위탁신청목록개요			
구 분	종 류	권(건)수	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단체)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도서관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입니다.
3.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기간 동안 보유·이용하며, 본 신청서의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도서관의 행사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 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목적에 따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기증신청서

1. 기증신청자

인적 사항 주소	성 명		성별	남 ☐ 여 ☐
	연락처			
	주소			

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	종 류	권(건)수	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단체)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도서관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입니다.
3.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기간 동안 보유·이용하며, 본 신청서의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도서관의 행사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 항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목적에 따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u> <u>시행규칙</u>	<u>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u> <u>시행규칙</u>
제2조(이용시간) 「파주시 도서관 <u>관리 운영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 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조(이용시간) 「파주시 도서관 <u>관리·운영 조례</u> 」----- ----- ----- -. ----- ----- ----- --.

□ 개정이유

-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명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관련 조항 및 별지 등 개정(제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6. 8. 13.

파 주 시 장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파 주 시 장

1. 개최목적

-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8. 20.(목) 14:00 ~ 15:00 [변경 전]
⇨ 2026. 8. 20.(목) 15:30 ~ 16:30 [변경 후]
- 장 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3.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개요

- 공간적 범위 : 673.9km²(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10년)

○ 주요내용

-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기본방향 및 발전 전략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활성화 부문별 계획

4. 주민의견 제출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8. 31.(월) 18:00까지
- 제 출 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sj00357@korea.kr) 로 제출
*주소: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파주시 통일로 600)
- 의견서(서식) : 공고문 붙임양식 참조

5. 기타사항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940-2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